

재검사등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	14일	
신 청 인	성명(법인명)						
	주소						
	(전화번호)						
재검사등의 종류	[]건조(별도건조)검사 []정기검사 []중간검사						
	[]특별검사 []임시검사 []임시항행검사						
	[]형식승인대상물건의 검정 및 확인 []예비검사						
	[]국제협약검사 []도면승인 []선체두께측정						
	[]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[]총톤수 측정·재측정						
전회검사기관				검사완료일자			
어 선	어선의 명칭			어선번호 또는 제조번호			
	선 적 항			총 톤 수			
형식승인대 상물건	품 명			규격·형식			
	제조번호			검사번호			
비 고							

「어선법 시행규칙」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재검사(재검정, 재확인)를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사 유 서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- 어선의 검사 등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재검사 등을 신청한 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는 관계 부분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으며, 관계 부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재검사 등을 하지 않습니다.

처리절차

